# 「청탁금지법」 주요 개정사항

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개정·시행('22.6.8.)에 따라 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, 비실명 대리신고 및 구조금 제도 도입 등 주요 개정사항 안내

## □ 개정 목적

○ 공직자등의 **공정한 직무수행이 필요한 분야**를 **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**하여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위반 행위에 대한 **신고 활성화 도모**

## □ 주요 개정내용

| 구분 | | 개정내용 |
|---|---|---|
| **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 (법 제5조제1항)** | | ■ 견습생 등 **모집·선발**(제3호)<br>■ **장학생** 선발(제5호)<br>■ **논문심사·학위수여**(제10호)<br>■ **인정(認定)** 업무(제12호)<br>■ **형의 집행, 수용자의 지도·처우·계호**(제14호) |
| **신고자 보호·보상 강화** | **비실명 대리신고 (법 제13조의2)** | ■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**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**하게 할 수 있음 |
| | **구조금 지급 (법 제15조)** | ■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가 **육체적·정신적 치료비, 쟁송비용, 이사비** 등을 지급 |
| | **이행강제금 (법 제15조의2)** | ■ 신고자에 대한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**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**<br>* 단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|

## □ 기관별 조치사항

○ 소속·산하기관에 **법 개정내용 전파 및 전 직원 교육** 실시

- 특히,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**추가된 부정청탁 대상 직무의 담당자**(교도관 등)에 대한 **충분한 교육** 필요

**붙임** **청탁금지법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**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5조(부정청탁의 금지)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. | 제5조(부정청탁의 금지) ① ----------. |
| 1.·2. (생 략) | 1.·2. (현행과 같음) |
| 3. 채용·승진·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| 3. 모집·선발·채용---------- |
| 4. (생 략) | 4. (현행과 같음) |
| 5.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, 포상,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·단체·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| 5. ----------우수자·장학생---------- |
| 6. ~ 9. (생 략) | 6. ~ 9. (현행과 같음) |
| 10. 각급 학교의 입학·성적·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·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| 10. ----------수행평가·논문심사·학위수여---------- |
| 11. (생 략) | 11. (현행과 같음) |
| 12.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 | 12. ---------- 평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가·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| 가·판정·인정----------평가, 판정 또는 인정하게---------- |
| 13. (생 략) | 13. (현행과 같음) |
| 14. 사건의 수사·재판·심판·결정·조정·중재·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| 14. ----------화해, 형의 집행, 수용자의 지도·처우·계호---------- |
| 15. (생 략) | 15. (현행과 같음) 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
| <신 설> | 제13조의2(비실명 대리신고) ①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한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가 서명한 문서로 갈음한다.<br>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여야 하며, 신고자 또는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,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|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<br>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. |
| 제15조(신고자등의 보호·보상) ① ~ ③ (생 략)<br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,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공익신고자등"은 "신고자등"으로, "공익신고등"은 "신고등"으로 본다. | 제15조(신고자등의 보호·보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br>④ ----------제6항까지,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, 제20조의2, 제21조 및 제22조----------. ---------- "신고등"으로, "공익신고자"는 "신고자"로, "공익침해행위"는 "이 법의 위반행위"로 ----------. |
| ⑤·⑥ (생 략)<br><신 설> | ⑤·⑥ (현행과 같음)<br>⑦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와 그 친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·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신고에 관한 감사·수사 또는 조사 등에 조력한 자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| 가 신고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<br>1. 육체적·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<br>2. 전직·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<br>3.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<br>4.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<br>5.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(인가·허가 등의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물품·용역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) |
|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포상금·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,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신고자”는 “제13조제1항에 따라 |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·보상금·구조금의 ----------.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신고를 한 자”로, “신고”는 “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”로 본다.<br><신 설> | ---------- ----------<br>----------.<br>제15조의2(이행강제금)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.<br>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, 절차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|
| 제23조(과태료 부과) ① (생 략) | 제23조(과태료 부과) ① (현행과 같음) |
|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(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)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(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)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다만, 「형법」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|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br>1.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(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)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(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). 다만, 「형법」 등 다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아니하며,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. | 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,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.<br>2.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|
| ③ ~ ⑦ (생 략) | ③ ~ ⑦ (현행과 같음) |